

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신청

신청당사자 및 신청상대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인 : 고용상 성차별(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부터 제11조) 피해노동자, 근무장소 변경 등 요청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(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), 불리한 처우 또는 불이익한 조치를 받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 (제14조제6항, 제14조의2제2항) 신청 상대방 : 위의 행위를 한 사업주
신청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단,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
구제명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차별적 행위의 중지,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(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 제도개선 명령 포함, 적절한 배상 등)
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확정된 시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
구제명령에 대한 불복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대한 불복절차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